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0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7.

발의자:김상희・양정숙・이수진비

오영환 · 권칠승 · 최혜영

강민정 • 윤미향 • 이탄희

김진애 · 강준현 · 인재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점이 발각된 경우 그 허가 등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,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, 허가 등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행정처분이므로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또한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행태는 의료기기 안전 및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 로 엄정한 형사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,

제43조의2제1항 및 제5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허가 또는 인증의"를 "허가, 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2호"를 "제1호의2·제22호"로, "허가 또는 인증을"을 "허가,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2 조제1항, 또는 제1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 나 신고를 한(제6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 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경우

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1조제1항 중 "제26조제1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 1항, 또는 제1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

신고를 한(제6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다 정지 등) ① -----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・수 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, 수리업자 · 판매업 자 ·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이 허가 또는 -----허가, 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-----인증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 입・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<u>제22호</u> 및 제23호 --제1호의2·제22호-----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---허가, 인증 또는 신고 수리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야 한다. -----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<신 설> 방법으로 제6조제1항 · 제2항, 제12조제1항, 또는 제15조제1 항 ·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(제6

- 2. ~ 24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43조의2(인증・신고의 취소) ① | 제43조의2(인증・신고의 취소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 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 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 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한 경우
 - 2. 3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51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을 제5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 <신 설>

조제(5항 <u></u>	또는 ;	제15조	<u>:</u> 제5	5항	-에
따라	허가	또는	인증	-을	빋	거
<u>나</u> 신]고를	한 것	으로	보	느	경
우를	포함	한다)	경우			
. ~ 2	24. (ই	변행과	같음)		

- 2.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140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	•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-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-	_	_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<단서 삭제>

<삭 제>
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

- 1.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법으로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1항, 또는 제15조제1 항·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(제6 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 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) 자

② (생략)